

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

1. 관련 기사

- 7.23.(목) 뉴스토마토, “SPC삼립 사망사고 430일…대표 ‘중처법 수사’ 제자리” 기사 관련

<주요 기사 내용 >

- SPC삼립 중대재해 발생한지 430일째,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
- 전문가 “소규모 사건 수사지연”...책임을 묻지 못해 안전관리 소홀 우려도

2. 설명 내용

-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의 수사 지휘 하에 현장 조사, 증거자료 확보 및 관계자 조사,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
 - 다만,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, 고의·인과관계 등 입증을 위해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의 방대한 자료 검토가 불가피하여 수사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음
- 노동부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동감독관 인력을 증원하고, 경력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수사역량·기법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
 - * 노동감독관 정원: '22.1월 100명 → '24.1월 138명 → '24.7월 233명 → '26.2월 529명
 - 또한, 노동부-검찰 수사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·강화하고 있음
- 그 결과, 중대재해 사건 처리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, 향후에도 동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
* 사건처리율(처리사건/발생사건): '22년 22.7%, '23년 34.3%, '24년 35.2%, '25년 42.4%

- 한편, 중대재해 사건 수사는 사업장 규모 등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어,
- 사회적 관심이나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수사가 지연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

담당 부서	안전보건감독국 중대산업재해수사과	책임자	과 장 이경제 (044-202-8950)
		담당자	사무관 정해엽 (044-202-8953)

